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3. 6. 21.(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혁신금융서비스 20건 신규 지정,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기간 연장 등 의결

금융위원회는 6월 21일 정례회의를 통해 20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5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3건의 서비스에 대해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3건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내용을 변경했다.

구체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구 분	업체명	서비스명		
신규지정 (20건)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카카오페이, 핀다, 베스트핀, 쿠콘, 패스트포워드, 팀윙크, 뱅크몰, 부엔까미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우리카드, 현대카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보안원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파운트파이낸스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지정기간 연장(3건)	대구은행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부산은행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시루정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오프라인 거래중계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3건)	두나무, 서울거래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신한카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팀 장	김보균 (02-2100-2841)
	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	사무관	한필윤 (02-2100-2859)
<공동>		책임자	과 장	강영수 (02-2100-2950)
	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사무관	이수암 (02-2100-2676) 김기훈 (02-2100-2953)
				박종혁 (02-2100-2952)
<공동>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책임자	과 장	오화세 (02-2100-2990)
		담당자	사무관	권나림 (02-2100-2991)
<공동>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 장	이수영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심원태 (02-2100-2656)
<공동>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장수 (02-2100-2620)
		담당자	사무관	조윤수 (02-2100-2625)
<공동>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책임자	과 장	김수호 (02-2100-2970)
		담당자	사무관	장희진 (02-2100-2979) 김정현 (02-2100-2971)
<공동>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책임자	과 장	조문희 (02-2100-2510)
		담당자	사무관	남진호 (02-2100-2523)
<공동>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책임자	국 장	김부곤 (02-3145-7120)
		담당자	팀 장	송경용 (02-3145-7125) 조강훈 (02-3145-7140)
<공동>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국 장	김준환 (02-3145-8020)
		담당자	팀 장	김은성 (02-3145-8030)
<공동>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책임자	국 장	황선오 (02-3145-7580)
		담당자	팀 장	유석호 (02-3145-7587)
<공동>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책임자	국 장	이종오 (02-3145-7550)
		담당자	팀 장	문선기 (02-3145-7447)
<공동>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책임자	국 장	이영로 (02-3145-5700)
		담당자	팀 장	김종환 (02-3145-5685)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실 장	이재석 (02-3145-7500)
	자금세탁방지실	담당자	팀 장	류영호 (02-3145-7502)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실 장	김충진 (02-3145-7160)
	금융데이터실	담당자	팀 장	심은섭 (02-3145-7162)





참고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결과 세부내용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20건)

①~10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카카오페이, 핀다, 베스트핀, 쿠콘, 패스트포워드, 팀윙크, 뱅크몰, 부엔까미노)

[서비스 주요내용]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 이는 '22.11월 9개 기업*에 대해 동일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데 이어 16개사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 *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특례 내용]

- 타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의 중개에 해당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현행 금융관련법령은 예금성 상품 중개업무의 등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등록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 아울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1사 전속의무)
-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1사 전속** 의무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금융상품판매업에 대한 등록 특례
 - ②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1사 전속의무 예외
 - 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제5항제3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 신고 면제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예금상품 판매대리·중개업 영위 특례

[주요 부가조건]

 급격한 자금이동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회사와 금융회사간 중개 계약 체결시 판매비중 한도*에 관한 사항을 계약사항으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 은행 :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5%이내에서 모집 / 저축은행·신협 :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의 3% 이내에서 모집

- 아울러, 서비스 출시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하였으며.
- 소비자 **오인방지**를 위해 예금성 상품의 계약주체는 신청회사(플랫폼 운영사)가 아닌 **금융회사**이며 해당 **금융회사**에서 **상품가입**이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예·적금 상품 정보를 추천받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간 금리경쟁 촉진을 통한 예금 금리 상승 효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일정]

○ '23년 3분기 이후 서비스 개발상황, 출시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을 거쳐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17~18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우리카드, 현대카드)

[서비스 주요내용]

○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토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특례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연령 이상인 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나, 부모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신용 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업종제한) 교통, 편의점, 문구점, 학원, 서점 및 청소년 일상생활에 밀접한 업종 등 (이용한도) 원칙적으로 월 10만원 이내, 부모의 신청이 있을시 최대 월 50만원

[기대 효과]

○ 가족카드 발급대상을 만 12세 이상까지 확대하여 **미성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대여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일정]

○ '24년 **상반기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19 금융 Al 데이터 라이브러리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보안원)

[서비스 주요내용] ※ 상세내용 별도 보도자료 참고

-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는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사용을 허용**하는 **데이터 인프라**로,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데이터전문기관, 참여기관, 이용기관으로 구성됩니다.
 - **신용정보원**은 '라이브러리' 설치·운영기관으로 동 서비스 참여기관의 결합 전·후 데이터(가명정보)를 저장
 - **금융보안원**은 **결합키 관리기관**으로 참여기관 및 이용기관의 **결합키**를 **안전**하게 생성·공유·관리
 - **데이터전문기관**은 **신용정보원 또는 이용기관**으로부터 **결합전 데이터**를, **금융보안원** 으로부터 **결합키 관련 정보**를 전송받아 **데이터를 결합**
 - **참여기관**은 데이터 제공자로서 각 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결합키, 일련번호**를 생성하여 **라이브러리**(신용정보원)에 **데이터**와 **일련번호**를 전송하고, **결합키 관리기관** (금융보안원)에 **결합키와 일련번호**를 전송
 - 이용기관은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결합 전·후 데이터를 활용

[특례 내용]

-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용정보법상 데이터전문기관의 업무, 정보집합물 삭제, 결합 데이터의 제공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① (신용정보법(이하 '법') §26의4②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22조의4⑦)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② (시행령 §14의2 및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이하 '안내서') p.69) 결합 전·후 데이터 및 결합키를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이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
 - ③ (시행령 §14의2③(2)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하 '규정') §15의2②(1)) 금융보안원이 결합키 생성 방식을 조율할 수 있도록 허용
 - ④ (안내서 p.70) 결합 신청시 이용기관으로 명시하지 않은 기관이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규정 별표8II(4)(1),(2) 및 안내서 p.94) 데이터 결합시, 결합 목적으로 '라이브러리 내 저장 및 재사용', 이용기관을 '라이브러리 참가기관 또는 참가기관이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기관'으로 작성하는 것을 허용
 - **(법 §31①, 시행령 §27①,② 및 안내서 p.40)** 신용정보원이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가명정보 활용 관련 공시의무 배제

[기대 효과]

○ 안전하고 편리한 데이터 활용 환경 및 생태계가 조성되고, 향후 다양한 금융회사 등이 결합 데이터를 활용한 상품, 서비스 등을 출시하여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일정]

○ '23년 7월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 **대출모집인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파운트파이낸스)

[서비스 주요내용]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모집인이 제시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조건이 배열되면, 소비자가 이를 비교·선택 후 대출모집인과의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후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는 온·오프라인 연계 주택담보대출 중개 서비스입니다.

[특례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신청회사가 대출성 상품 중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중개 업무를 신청회사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회사가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중개하지 않더라도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대출성 상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기대 효과]

○ 플랫폼과 대출모집인의 연계를 통해 기존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고, 소비자가 상담 이전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에서 수집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정보접근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일정]

○ '23년 하반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3건)

①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구은행)

[기존 지정내용] ('21.7.21. 지정)

 (서비스 주요내용) 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개인의 실지명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확인 하여야 하나.
- → 기존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의 스캔이미지를 이용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23.7.21.~'25.7.20.)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2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부산은행)

[기존 지정내용] ('21.7.21.)

 (서비스 주요내용) 비대면 실명확인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 사진'을 대조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의 5가지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사용 하여야 하나,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확인 방법: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기존 계좌 활용, ⑤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
 - → 영상통화 대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얼굴촬영화면을 대조**하는 안면인식기술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23.7.21.~'25.7.20.)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③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오프라인 거래중계 서비스 (시루정보)

[기존 지정내용] ('21.7.21.)

○ (서비스 주요내용) 신용카드가맹점(오프라인)에서 고객의 휴대폰 등을 통해 QR, SNS, NFC 등의 방법을 통해 비대면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3항 등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해야하나, QR, SNS, NFC 등으로도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23.7.21.~'25.7.20.)

○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 및 운영성과 분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3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3건)

1~2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두나무, 서울거래)

[기존 지정내용] ('20.4.1. ~ '24.3.31.('22.연장))

 (서비스 주요내용) 오프라인에서 사설시장 중심으로 유통되는 비상장 주식을 모바일에서 거래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 원스톱 모바일 거래 플랫폼입니다.

○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42조제1항 및 제4항,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 두나무, 서울거래가 동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본질적 업무인 '매매주문 접수 및 전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야 하므로 본질적인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보유하여야 하나,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IT 기업으로 규제 특례가 필요

[지정내용 변경]

- 두나무, 서울거래는 현재 각각 증권사 1곳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나, 투자자를 확보하여 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연계 증권사 추가를 신청하였습니다.
 - 연계 증권사 확대시 비상장주식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22.3월 지정기간 연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를 완료하여 시장 건전성도 개선된 상황임을 고려하여 각각 1곳씩 연계 증권사를 추가(변경 후 각각 2곳)하는 것으로 지정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③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신한카드)

[기존 지정내용] ('21.1.27. ~ '25.1.26.('22.연장))

○ (서비스 주요내용) 미성년자인 자녀(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가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발급·사용토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7

-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연령 이상인 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하나, 부모의 신용카드 이용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가 신용 카드(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내용 변경]

○ 건당 결제한도를 폐지(월 이용한도 10만원은 유지)하고, 이용 가능한 업종에 청소년 밀접 업종을 추가·확대하는 것으로 지정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